



장도원의 함흥만세운동 사건

【결정사안】

장도원이 보성전문학교를 중퇴한 뒤 함흥 영생중학교 교사로 재직할 때 3·1운동이 일어나자 영생중학교를 중심으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고, 또한 성서조선에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글을 기고하여 핍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독립운동 행적 규명을 요청한 것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1. 보성전문학교 중퇴와 영생중학교 교사 재직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보성전문학교 학적 관계는 고려대학교 교우회·학적과·100년사편찬위원회 등에 문의했지만 장도원의 학적 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장도원이 1907년 개교한 함흥 영생중학교의 교사 재직과 영생중학교 학력도 확인할 수 없었다.

2. 문헌조사 결과, 함흥만세운동은 총 16회에 걸쳐 2,420명이 참가하여 290명이 일제경찰에 체포되었고, 시위자 3명은 살해당하였으며, 시위자 6명과 일제경찰 2명이 부상을 당한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함흥군에서도 만세운동 주도층은 다른 지역의 양상과 같이 농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학생과 기독교인이 큰 역할을 하였음이 추정된다.

또한, 함흥만세운동에서의 장도원의 역할은 발굴한 판결문을 통하여 장도원이 1919년 2월 28일 함흥면 중하리 기독교 교회에서 이근재·한영호·조영신·홍기진·이순기 등과 3월 3일 정오 즈음 함흥면 상리에 위치한 쌀시장(米市場)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할 것을 합의·결의한 것 때문에 1920년 7월 5일 함흥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공소(항소)했지만 1920년 7월 23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의 판결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또, 발굴된 장도원 판결문과 장도원 사건 관련 동아일보 사건기사에 의하면 장도원은 함흥 만세운동 이후 일경에 체포되어 1년여 동안 함흥지방법원 검사국에서 예심을 받다가 함흥지방법원에서 1920년 7월 5일 제1회 공판 때 검사가 1년 6개월을 구형하였고 징역8월의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볼 때, 장도원은 함흥만세운동과 관련하여 1919년 7월경 체포되어 1920년 7월 5일 판결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3. 장도원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가기록원·국사편찬위원회 등의 소장 자료 조사와 서대문형무소 자료에서는 장도원의 수형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

4. 장도원이 성서조선에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글을 기고했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장도원은 성서조선 제26호(1931. 3.)에 『도덕에서 완전히 실패하고오라』에서 제69호(1934. 10.)에 『구약성서와 기독교』까지 총 46개의 글을 게재한 것은 확인했으나 장도원이 성서조선에 게재한 글은 기성 교회를 비판·부정하고 그 교회에 속하지 않고 기독교 복음으로 귀일할 것을 주장한 무교회주의 신앙을 신학적으로 제시하였을 뿐 직접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내용의 글은 찾을 수 없었고, 성서조선에 게재한 글로 일제의 탄압·감시를 받은 증거 또한 찾을 수 없었다.

【전 문】

【사 건】 : 가-4092 장도원의 함흥만세운동 규명

【신청인】 : 장병열

【결정일】 : 2007. 4. 17.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 기재와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음을 결정한다.

【이 유】

I. 사건 개요

장도원(張道源, 1894.9.27~1968.8.23)은 보성전문학교 중퇴 뒤 함흥 영생중학교 교사로 재직할 때 3·1운동이 일어나자 영생중학교를 중심으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고, 또한 성서조선에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글을 기고하여 핍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독립운동 행적규명을 요청한 사건이다.

II. 진실규명의 과제

장도원의 항일독립운동 행적을 규명하기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함흥지역 3·1운동의 전개양상을 밝히는 것이다.

1919년 3월 1일부터 거의 1년 동안 전국에서 전개된 3·1운동은 연인원 약 2백만 명이 참가했고, 시위참가자 7,500여 명이 일제의 경찰 등에 의해 살해되거나 4만 6천여 명이 체포되었다.¹⁾ 이처럼 3·1운동은 전 민족적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우리 민족해방운동사



에 있어서 큰 분수령을 이루는 사건이었지만 지방별 전개양상은 온전히 조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²⁾ 특히 북쪽 지방은 실제 접근할 수 없는 한계성도 갖고 있어 무엇보다도 먼저 함흥만세운동의 회수·전개일자·주도층·규모·내용 등 전반적인 양상을 규명하는 것이다.

둘째, 함흥만세운동에서 장도원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를 찾는 것이다.

신청인은 장도원이 보성전문학교 중퇴 뒤 함흥영생중학교 교사로 재직 당시 함흥만세운동을 주도했고, 그로 인하여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장도원의 이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 함흥만세운동에 장도원이 참가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일제가 생산한 경찰·검찰 조서, 재판기록, 수형기록과 당시의 신문기사 등을 발굴하는 것이다.

셋째, 장도원이 잡지 성서조선에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글을 기고했는지 여부와 성서조선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일제는 성서조선 제158호(1942년 3월) 권두문에 어떤 흑한에도 견디고 살아남는 개구리의 생명력을 노래한 ‘조와(甲蛙)’라는 글이 조선의 독립을 선동한다고 하여 1942년 3월 30일 김교신 등 13인을 체포해 서대문형무소에 1년간 감금하고 전국의 성서조선 독자 약 300명을 체포하여 취조했는데, 이것을 통칭하여 ‘성서조선사건’이라고 불렀다.³⁾

Ⅲ. 조사의 근거와 목적

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진실규명의 범위 중의 하나로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에 대하여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본법이 “항일독립운동”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대상 중 하나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는 함흥만세운동을 주도했고, 성서조선에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내용의 글을 기고하는 활동을 했다는 장도원의 독립운동 행적을 규명하고, 기본법 제4장(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이 정한 바와 같이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1) 강만길, 『고쳐쓴 한국현대사』, 창작과비평사, 1994, 45쪽.

2) 3·1운동 관련 연구서는 『3·1민족해방운동연구』(한국역사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엮음, 청년사, 1989)를 참조하고 논저목록은 「3·1운동 관계 주요 자료·논저 목록」(같은책, 551~589쪽)을 참조.

3) 채송희, 『金敎臣의 對日觀 研究』, 연세대학교대학원신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38~60쪽.

IV. 조사방법 및 경과

1. 조사의 방법

가. 문헌자료⁴⁾ 조사

장도원 사건과 관련하여 함흥지역 만세운동과 성서조선 관련 연구논저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연구회보, 국가기록원,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사논저목록, 국회도서관 전자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각 대학도서관 등을 중심으로 검색하였다.

나. 전문가 자문

항일독립운동사 분야의 자료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국가보훈처 공훈심사과 연구원 김성민⁵⁾과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임경석⁶⁾ 교수를 만나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다. 진술 청취

신청인 장병열⁷⁾, 참고인 장은순⁸⁾, 김의경⁹⁾, 홍의표¹⁰⁾, 장명덕¹¹⁾을 만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2. 조사의 경과

2006년 7월 4일 국가보훈처에 장도원의 독립유공자 포상신청 여부 확인을 시작으로 국가정보원에 공안조회 의뢰 및 전문가 자문, 참고인 진술 등 본 사건과 관련된 조사 진행과정을 시간과 일정순서에 따라 조사일지¹²⁾를 작성하였다.

4) 참고문헌 목록.
 5) 김성민연구관 자문.
 6) 임경석교수 자문.
 7) 신청인 장병열 진술서.
 8) 참고인 장은순 진술서.
 9) 참고인 김의경 진술서.
 10) 참고인 홍의표 진술서.
 11) 참고인 장명덕 진술서.
 12) 장도원사건 조사일지.



V. 조사결과

1. 함흥만세운동의 전개양상

현재 함흥지역 만세운동을 전체적으로 다룬 연구논저¹³⁾는 없지만, 선행연구와 자료를 종합하면 그 전개과정은 다음과 같다.

함흥에서 1919년 3월 1일부터 만세운동이 일어난 것으로 기록된 자료가 있는데¹⁴⁾ 이것은 함흥의 만세운동이 서울의 '민족대표'나 시위 주도 단체·조직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3월 1일 함흥만세운동의 실상을 밝힐 수 있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함흥군¹⁵⁾ 만세운동 일지를 일제가 만든 자료로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¹⁶⁾

<표 1> 1919년 함흥군 면별 만세운동 일람표

월일	시위지명	시위방법		시위인원(명)	시위자종별	체포자(명)	사상(명)	
		폭력	비폭력				시위자	일제측
3.3	함흥면	0		200	학,기	158	상6	경찰.상2
3.4	함흥면		0	200	학,기	63		
	주지면지경리		0	70	학,기			
3.6	함흥면	0		100	학,기		사3	
	주지면지경리		0	150	학,기,보			
	운전면본궁		0	100	학,기,보			
	상기면오노리		0	400	학	15		

13) 함흥의 만세운동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논저는 다음과 같다.

李昌建, 「3.1運動의 地域別 主導勢力 研究」, 大邱曉星가톨릭대학교大學院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1999, 84~93쪽; 姜興秀 著, 「咸興의 示威運動」 『朝鮮獨立血闘史』, 高麗文化社, 1946, 87~88쪽; 咸興 永生中·高等學校同窓會, 「永生이 낳은 3·1運動 愛國志士들」 『永生』同窓會誌 創刊號, 영생중·고등학교동창회, 2002, 63~69쪽.

14) 『韓國獨立運動史(三)』 『獨立』, 1919.9.2.

15) 당시 함흥군의 소재면은 주서면(州西面)·함흥면(咸興面)·주북면(州北面)·기곡면(岐谷面)·하기천면(下岐川面)·상기천면(上岐川面)·하조양면(下朝陽面)·상조양면(上朝陽面)·천서면(川西面)·천원면(川原面)·덕산면(德山面)·연포면(連浦面)·삼평면(三平面)·운전면(雲田面)·서호면(西湖面)·서퇴호면(西退湖面)·남주동면(南州東面)·북주동면(北州東面)·덕천면(德川面)·주지면(朱地面) 등 20개였다. (張熙福 編, 『精密調査郡島面洞里名稱一覽』, 松園書齋, 1918, 139~141쪽).

16) 朝鮮憲兵隊司令部 朝鮮總督府警務部, 「朝鮮騷擾事件一覽表」, 1919.4. 盡口調, 『韓國關係』一卷, 大正八年: 陸軍省: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其一, 87~92쪽(원본은 국회사서관 전자도서관 <http://nanet.go.kr>에서 볼 수 있음). 일제가 생산한 자료는 식민지조선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우리독립운동의 내용을 축소하고 악의적으로 왜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용에 철저한 자료 검증이 필요하다. 이 자료에 시위운동회수·참가자 등은 왜곡될 가능성이 크지만 체포자의 경우는 그나마 당시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월일	시위지명	시위방법		시위인원(명)	시위자종별	체포자(명)	사상(명)	
		폭력	비폭력				시위자	일제촉
3.7	상조양면상한리		0	150	보	3		
3.8	퇴청면퇴청		0	150	학,기	2		
	기곡면동흥리		0	150	보	12		
3.9	퇴청면퇴청		0	80	학,기			
3.11	연포면연포		0	80	학,기			
	하기천면하도리		0	60	보	1		
3.20	주지면지경리	0		300	학,기,보	34		
3.21	덕산면회양리		0	80	보	2		
4.8	덕천면풍서리	0		150	보			
합계	16회	4회	12회	2,420		281	9	2

※ 비교 : (1) 시위자 종별란의 학은 학생, 기는 기독교인, 보는 '보통민'이다.
 (2) 사상란의 사는 사망, 상은 부상이다.
 (3) 함흥군에 퇴청면은 없다.

〈표 1〉은 두 달의 정보를 담고 있는 한계가 있지만 함흥군 만세운동이 총 16회 2,420명이 참가해 281명이 일제경찰에 체포되었고, 시위자 3명이 살해당하고 시위자 6명과 일제경찰 2명이 부상을 당한 것이 확인된다. 만세운동 주도층은 다른 지역의 양상같이 농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함흥군에서는 학생·기독교인이 큰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다.¹⁷⁾

2. 장도원과 함흥만세운동의 관계

장도원이 함흥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그로 인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는 신청 내용에 대해 먼저 학생과 기독교인이 만세운동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는 통계자료¹⁸⁾에 근거하여 장도원이 재직·재학하였을 학교관계와 함흥만세운동과 관련된 판결문 등의 직접적인 기록 자료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7) 1919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함경남도(함흥·원산)의 3·1운동 입감자 총 764명의 계급·계층별 구성을 보면 농민 502명(65.7%), 노동자 20명(2.6%), 교사·학생 83명(10.8%), 종교인 11명(1.4%), 기타공무자유업자 21명(2.7%), 상업종사자 86명(11.2%), 기타자영업종사자 9명(1.1%), 공업종사자 26명(3.4%)이다. (정연태·이지원·이운상, 『3·1운동의 전개양상과 참가계층』 『3·1민족해방운동연구』, 청년사, 1989, 238쪽) 이 입감자 통계는 함경남도 전체이고 일제가 생산했다는 원초적 한계가 있지만 함흥군의 만세운동참가자의 대체적 수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인다.

18) 주17의 내용.



첫째, 보성전문학교 중퇴와 영생중학교 교사 재직에 대한 것이다.

보성전문학교 학적 관계는 고려대학교 교우회·학적과·100년사편찬위원회 등에 문의했지만, 장도원의 학적 사항은 없었다.¹⁹⁾ 장도원이 1907년 개교한 함흥 영생중학교의 교사 재직과 영생중학교 학력도 확인할 수 없었다.²⁰⁾ 어느 학교인지는 찾을 수 없었지만 장도원이 당시 학생신분인 것은 확인하였다.²¹⁾

둘째, 장도원이 함흥만세운동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이다.

1919년 2월 28일 함흥면 중하리 기독교 교회에서 이근재·한영호·조영신·홍기진·이순기 등과 3월 3일 정오 즈음 함흥면 상리에 위치한 쌀시장(米市場)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할 것을 합의·결의한 것 때문에 1920년 7월 5일 함흥지방법원에서 보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공소(항소)했지만, 1920년 7월 23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의 판결을 받은 것이 장도원의 판결문(『大正九年刑控第四五九号判決』, 1920.7.23.)에서 확인되었다.²²⁾

그러나, 장도원이 체포된 정확한 시기나 1919년 2월 28일 모임 뒤 함흥만세운동에 참가했는지 여부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은 자료의 부재로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장도원의 경우는 일제에 체포되어 1년 동안 함흥지방법원 검사국에서 예심을 받다가 함흥지방법원에서 1920년 7월 5일 제1회 공판 때 검사가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는 당시 신문의 보도에 비추어²³⁾ 1919년 7월 이전에 체포된 것으로 추정된다.²⁴⁾

셋째,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는가에 대한 것이다.

19) 고려대학교 학적 조회에서 1934년 장도원이란 이름이 있지만 동명이인이었다.

20) 『永生』同窓會誌 創刊號에는 영생중학교 교직원명단과 졸업생명부가 있지만 장도원의 이름은 없었다.(咸興 永生中·高等學校同窓會, 영생중·고등학교동창회, 2002, 6~10·352~372쪽). 현재 영생중·고등학교동창회 부회장 오영백은 장도원의 영생중학교 학력을 더 찾아보겠다고 하였다.

21) 『大正九年刑控第四五九号判決』(1920.7.23)은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kh2.koreanhistory.or.kr/>)에서 장나미 조사관이 찾았는데 '초서'체로 되어 있다. 이 자료의 탈초는 신은영 조사관이 했고, 번역은 조철행 조사관이 했다.

22) 장도원 판결문(번역본, 탈초본) : 별첨1 및 별첨2.

23) “조선독립운동에 참가하여 북선지방에서 대대적 활동을 하다가 당국에 체포되어 1년 동안이나 함흥지방법원 검사국에서 예심을 받고 있는 함흥군 咸興面 上里 사는 張道源(26)의 제1회 공판은 지난 5일에 함흥지방법원에서 岡本검사정과 山口판사가 착석한 후 곧 개정되었는데 피고의 감개한 진술과 검사의 냉정한 논고가 있을 후 검사는 1년 6개월의 구형을 하고 오후 4시경에 폐정되었다는데 판결 언도 시일은 아직 미정되었으나 불원간 언도가 있겠다하며 피고는 공술하는 중에 자기는 기독교의 진리에 의하여 민권의 평등과 정부가 없음을 원한다고 말하여 판사를 놀라게 하였다더라.”(『法廷』에서 無政府主義 독립운동자 장도원은 공판 중 법정에서 무정부를 원하다고 『동아일보』 1920.7.8)

24) 함흥만세운동사건과 관련하여 1919.3.31자 『每日申報』의하면 1919년 3월 2~30일 사이에 함흥만세운동으로 일제 경찰에 체포된 이근재·한영호·조영신·홍기진·이순기 등 41명은 재판에 회부되었다는 기사내용이 있으며, 1919년 4월 21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상소하여 1919년 7월 3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 판결이 취소되고, 이근재 징역 2년, 한영호·홍기진·이순기·조영신이 각 징역 1년 6월에 판결을 받았음이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編, 『판결 대정8년 형공(刑控) 제 379·380호』 『독립운동사자료집 5 : 삼일운동재판기록』, 1971, 1009~1010쪽. 이 판결의 원문은 『大正八年刑控第三七九·三八〇號判決』(京城覆審法院, 1919.7.3)이란 문서로 <http://kh2.koreanhistory.or.kr/>에 있다.

국가기록원·국사편찬위원회 등의 소장 자료 조사와 서대문형무소²⁵⁾ 자료²⁶⁾에서는 장도원의 수형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

3. 장도원의 성서조선을 통한 독립정신 고취여부

장도원이 성서조선에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글을 기고했는지 그리고 성서조선사건에 연관되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서조선에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글을 기고했는지에 대한 것이다.

성서조선은 무교회주의(無教會主義)²⁷⁾ 신앙운동을 전개한 김교신·함석헌 등이 1927년 7월부터 1942년 3월까지 총 158호를 발행하였다. 무교회주의자와 성서조선에 대한 평가는 둘로 나누어지는데, 일제가 허용하는 합법공간에서 표면적으로 순수 종교적 ‘문서선교’를 내세웠지만 내면적으로 기독교의 ‘박해와 부활’이라는 교리를 빚대어 민족독립의식을 고취했다는 평가²⁸⁾가 있는 반면 황국신민의 숭배자이자 무교회주의자의 창시자인 내촌감삼(內村鑑三)을 숭배하는 점, 기성 기독교단의 신앙열기와 부흥회를 차단한 점, 성서조선에 민족 고통의 실상이나 일제의 만행·일본 군국주의를 비판하는 글이 한 편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반일적으로는 볼 수 없고, 일제 식민정책에 안주했다는 평가도 있다.²⁹⁾

장도원은 성서조선 제26호(1931. 3)의 「도덕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오라」에서 제69호(1934. 10)의 「구약성서와 기독교」까지 총 46편의 글을 게재했음을 확인했다.³⁰⁾ 장도원이 성서조선에 게재한 글은 기성 교회를 비판·부정하고 그 교회에 속하지 않고 기독교 복음으로 귀일할 것을 주장한 무교회주의 신앙을 신학적으로 제시했지만³¹⁾ 직접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내용의 글은 찾을 수 없었다. 또한, 성서조선에 게재한 글 때문에 일제의 탄압·감시를

25) 일제 통감부가 항일의병운동가들을 수감하기 위해 1908년 10월 21일 축조한 경성감옥은 1912년 9월 3일 서대문감옥으로, 1923년 5월 5일 서대문형무소로 명칭을 변경하여 8·15까지 사용되었다.(김상웅, 『서대문형무소 근현대사』, 나남출판, 2000, 10~11쪽)

26) 國史編纂委員會 編,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別集』 1~9, 1991~1993; 서울대학교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구서울구치소 보존대상 시설현황 및 관련자료 조사연구(Ⅱ)』, 서울특별시, 1998.

27) 현재의 교회 제도나 의식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하여서만 얻을 수 있고, 인류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라 오직 신앙으로만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일본의 종교 지도자 우치무라 간조(內村鑑三)가 주창하였다.

28) 『나라사랑』제17집(외솔회 발행, 1974)에 수록된 유달영·김정환·민경배·송두용·노평구·김성태·김현직 등의 글: 金順玉, 「日帝時代 無教會主義 信仰運動에 관한 一考察 - 聖書朝鮮을 중심으로 -」, 이화여대교육대학원 사회과교육전공(역사교육분야) 석사학위논문, 1985; 채송희, 「金敎臣의 對日觀 研究」, 연세대학교대학원신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29) 한승홍, 『무교회주의』, 두란노, 1991; 李起勇, 「內村鑑三의 기독교사상 및 그의 日本觀과 朝鮮觀」, 『韓日關係史研究』제9집, 韓日關係史學會, 1998.

30) 『聖書朝鮮』창간호(1927. 7)~158호(1942. 3), 서울: 성서조선사, 영인본 1982(대구: 一心社).

31) 한승홍, 「장도원의 무교회사상」 『무교회주의』, 두란노, 1991, 61~67쪽. 이 책(64쪽)에서 재일본 목사 장도원이라는 호칭을 쓴 것을 보면 1931년 장도원은 일본에서 목사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받았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둘째, 성서조선사건과의 관련 여부에 대한 것이다.

김교신·함석헌·유달영·송두용 등 13명은 성서조선사건으로 1942년 3월 30일을 전후하여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미결수로 서대문형무소에서 만 1년 뒤인 1943년 3월 29일 전원 석방되었으나,³²⁾ 장도원이 성서조선사건에 연루돼 체포·옥고를 치른 사실은 찾을 수 없었다.

VI. 결론

조사개시 이후 전문가, 신청인, 참고인 등의 자문과 면담 그리고 문헌 자료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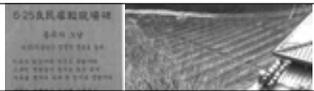
장도원은 기독교에 입교하여 10여 년간 교회를 다녔고, 그가 다니던 함흥 중하리교회에서 강봉우라는 인물을 만나 전국적으로 항일독립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전해 듣고, 함흥 지역에서도 1919년 3월 3일 거사를 행하자는 모의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3월 2일 자발적인 함흥시민들의 만세운동으로 인하여 대대적인 예비검속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학생 88명, 시민 46명이 구속되었다. 학생 88명중 조영신 등 23명이 영생중학교 학생들로서 이들은 1919년 4월21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초심을 받고, 1919년 7월 3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재심을 받았으며, 1919년 9월 1일 고등법원에서 마지막 판결을 받고 복역을 했거나 사망하였다.

이와 같은 함흥 만세운동 관련자의 판결문상에는 장도원과 관련된 직접적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고, 장도원의 판결문을 통해 이순기, 홍기진, 한영호 등의 심문조서 내용에 장도원의 연루여부가 기재되었음이 확인되었지만, 장도원의 함흥법원의 초심판결문이나 복심판결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순기, 홍기진, 한영호의 심문조서 및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했다는 수형인명부는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장도원이 1919년 2월 28일 함흥면 중하리 기독교 교회에서 3월 3일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합의·결의한 일로 인하여 1920년 7월 5일 함흥지방법원에서 보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항소했지만, 1920년 7월 23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의 판결을 받은 것이 그의 판결문을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1920년 7월 8일자 신문기사를 통해 장도원이 판결을 받기까지 함흥지방법원 검사국에서 1년여 동안 예심을 받다가 1920년 7월 5일 제1회 공판에서 검사에게 1년 6개월을 구형

32) 성서조선사건관련 조서, 판결문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 연구논저와 회고록 등의 검토에서도 성서조선사건으로 1년간 옥고를 치른 13명 전체의 명단은 알 수 없었다. 1927년 성서조선은 김교신·함석헌·송두용·정상훈·유석동·양인성 6인의 동인지로 발행된 것으로 볼 때(金順玉, 「日帝時代 無教會主義 信仰運動」에 관한 一考察 - 聖書韓鮮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사회교육전공(역사교육분야) 석사학위논문, 1985, 25쪽) 이 6명은 13명에 포함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받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장도원이 예비검속이 이루어진 1919년 3월 3일 이후인 1919년 7월경 체포되어 1년 여간 심문을 받다가 1년 뒤인 1920년 7월 5일 제1회 공판에서 보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 신청인이 잡지 성서조선(김교신, 함석헌 주필)에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내용의 글을 기고하여 해방 때까지 일제 경찰의 감시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장도원이 성서조선에 총 46개의 글을 기고는 하였지만 그 내용은 기성교회를 비판·부정하면서 무교회주의 신앙을 주장하는 내용의 글들이며, 기고문 중에서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내용의 글은 찾을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일제의 탄압·감시를 받았거나 성서조선 사건에 연루되어 형을 살았다는 사실도 찾을 수 없었다.

이상과 같이 장도원의 함흥만세운동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 중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는 내용과 성서조선에 독립운동을 고취하는 글을 기고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었으나, 장도원이 함흥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는 주장내용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받은 판결문과 이 사건과 관련한 신문기사의 내용으로 그의 항일행적이 확인된 바, 이에 본 사건은 진실규명으로 결정한다.



◆ 별첨 1

장도원 판결문 번역본

1920년 刑 第459호

判決(판결)

함경남도 咸興郡 咸興面 上里 219번지 재적 및 거주 학생
張道源

9월 27일생 26년

위 보안법위반 피고 사건에 대해 1920년 7월 5일 함흥지방법원이 언도한 유죄판결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拱訴의 신청이 있어서 조선총독부 검사 寺田恒太郎 입회하에 심리 판결한 것은 다음과 같다.

主文(주문)

본건 공소는 그 것을 기각한다.

理由(이유)

피고는 1919년 2월 말경 동경에서 조선유학생 등의 조선독립의 선언을 계획하고 또 조선에서는 서울 등지에서 조선독립을 선언하는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들어 알고, 그 취지에 찬동해 동월 28일 오후 9시경 함흥군 함흥면 中荷里 소재 예수교 예배당인, 당시 신자가 아닌 자도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개 장소에서 李根栽·韓泳鎬·洪基鎭·李舜基·趙永信 등과 함께 함흥지방에서도 다른 지방에서처럼 조선독립을 위한 시위운동을 하려고 그 방법으로써 오는 3월 3일 정오 12시를 기해 함흥상리 米市場에서 독립기를 휘두르고 독립선언서를 다수에게 배포하고 독립만세를 고창할 뜻으로 정치에 관해 불언 언사로 협의를 하여 치안을 방해했던 자이다.

이상의 사실은 피고가 당 법정에서 나는 1919년 2월 28일 북간도에서 온 姜鳳羽에게 자기 집에서 저녁밥을 대접한 뒤 오후 9시 함남 함흥군 함흥면 중하리 소재의 예수교예배당으로 갔는데, 강봉우가 모여 있던 30명의 군중에게 지금 서울, 원산, 평양 등지에서 조선독립선언서를 반포하고 조선독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며 함흥에서도 각지에서처럼 행동할 것을 권유했는데 동 예배당은 성서를 연구하는 이외의 사람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 같은 날 밤에도 신자 외의 사람도 와있었다고 공술, 원심 제1회 공판시말서 중 피고인 나는 13년 전부터 장로파에 속하는 예수교 신자로 항상 함흥면 중하리에 있는 예수교회에 출입하여 왔으며,

1919년 2월 28일 오후 9시경 동 예배당에 왔을 때 당시 동 예배당은 공개되어져 신자가 아

닌 사람도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어 약 30명쯤 모여 있었는데, 북간도에서 온 강봉우라는 사람도 와서 일동에 대해 동경에서 조선유학생 등이 조선독립의 선언을 계획하고 서울, 평양, 원산 등 조선 각지에서도 조선독립선언서를 반포하고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할 계획인 것에 대해 함흥에서도 각지처럼 할 것을 권유하자 수명의 사람이 찬성하고 그 방법 일시 등을 협의하였다는 뜻의 공술 기재.

압수령 제1호 함흥지방법원 1919년 형제 193호 형사 사건기록 검사의 피고인 이순기 심문 조서 중, 1919년 2월 28일 중하리 예배당에서 나와 장도원·조영신·이근재·한영호·홍기진 등 여러(數人 : 두서너) 사람 있는 곳에서 간도에 사는 姜某라는 자와 동경에서도 조선유학생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고, 또 서울 등지에서도 기도하고 있으므로 함흥에서도 하는 것이 어떠한가 제안하여 나 외 전기 5명이 독립선언을 할 것을 결정하고, 3월 1일 조영신을 원주로 보내 동지에서 독립선언서를 얻어와 그것에 의거해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3월 3일 국장일에 미시장에서 독립기를 휘두르고, 그 선언서를 배포해 만세를 부를 계획을 결의했다는 뜻을 공술 기재.

위 검사의 피고인 한영호 심문조서 중, 나는 1919년 2월 28일 중하리 예배당에서 이근재 등과 함께 조선독립선언서를 배포하여 독립을 선언하고 만세를 부를 것을 협의한 결과 3월 3일 정오 12시를 기해 함흥 상리 미시장에서 독립기를 휘두르고 독립을 선언하고 만세를 고창할 것이라고.

위와 같은 계획을 하기로 한 것은 서울 등지에서도 한국독립선언을 하고 있고, 당지에서도 같은 선언을 하니 우리들은 조선총독정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반항을 불러 일으켜 국제회의에서도 이것을 인정하여 자연 독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뜻의 공술 기재 및 위와 같은 사법경찰관의 피고인 홍기진 심문조서 중, 1919년 2월 28일 밤 함흥군 함흥면 중하리 예배당에서 조선독립선언을 할 것에 대해 협의함. 당시 근일 중에 서울·평양·부산·대구·원산 등의 도시에서 독립선언을 하고 선언서를 배포하여 만세를 부른다는 것을 비밀히 알고 있고, 당 함흥도 상당한 도시임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다른 지역과 같은 일을 할 것이라고 계획하여 1919년 2월 28일 밤 중하리 예배당에 2~30명이 모여 선언을 할 것에 대해 협의했지만, 그 중 반대파도 있었음. 희망자만 남기로 하여 드디어 이순기·한영호·이근재·조영신·장도원, 나 총 6명만이 남아 협의한 결과, 다른 곳에서 선언을 한 모양을 보고 함흥에서도 그것을 모방하여 할 예정이다. 또 선언서를 얻기 위해 조영신을 원산으로 보낼 것을 결의했다는 뜻의 공술 기재에 대해 그것을 인정하다.

법에 비추어 피고의 행위는 그 범죄가 1919년 4월 칙령 제7호 시행 전에 관계됨으로 형법



제8조 제6조 제10조에 의해 신규 양법의 형을 대비해 그 가벼운 것을 적용해야 하고, 구법에 의하면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고, 신법에 의하면 전시 칙령 제7호 제1조 제1항에 해당, 구법인 보안법의 형이 가벼우므로 앞의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를 적용하고, 所定刑 중 징역형을 선택해 그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를 징역 8월에 처하고 압수 품은 몰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의해 처분함.

따라서 원 판결은 위 判者에 적합한 것으로써 피고의 공소는 이유없고, 이에 동법 제261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20년 7월 23일

◆ 별첨 2

장도원 판결문 탈조본

大正九年刑控第四五九号

判決(판결)

咸鏡南道咸興郡咸興面上里二百十九番地在籍及居住学生

張道源

九月二十七日生 二十六年

右保安法違反被告事件に付、大正九年七月五日咸興地方法院が言渡したる

有罪判決に対し、被告より控訴の申立ありたるを以て朝鮮總督府檢事寺田恒太郎干与審理判決する左の如し

主文(주문)

本件控訴は之を棄却す

理由(이유)

被告は大正八年二月末頃東京に於ては朝鮮留学生等の朝鮮独立の宣言を計画し、又朝鮮に於ては京城其他の各地に於て朝鮮独立を宣言する独立宣言書を配布し独立万歳を高唱する計画ある由を聞知し、其趣旨に賛全(同)し全月二十八日午後九時頃、咸興郡咸興面中荷里所在の耶蘇教礼拝堂たる当時信者にあらざる者と雖も自由に出入し得べき公開の場所に於て李根栽、韓泳鎬、洪基鎮、李舜基、趙永信等と共に咸興地方に於ても亦他地方に倣ひ、朝鮮独立の為め示威運動を為さむと欲し、其方法として翌三月三日正午十二時を期し、咸興上里米市場に於て独立旗を打振り独立宣言書を多数人に配布し、独立万歳を高唱すべき旨政治に關し不穩の言辞を以て協議を為し、因て治安を妨害したるものな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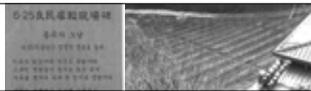
以上の事實は被告の当法廷に於ける私は大正八年二月二十八日北間島より來れる姜鳳羽を自宅にて夕飯の馳走を為したる后、午後九時咸鏡南道咸興郡咸興面中荷里所在の耶蘇教礼拝堂へ赴きたるに姜鳳羽は參集したる三十名の群衆に対し、目下京城、元山、平壤、其他各所に於て朝鮮独立宣言書を頒布し朝鮮独立を計画したるに付、当咸興に於ても右各地に倣ひ其行動を執ては如何と勧めたり全(同)礼拝堂は聖書を研究する以外の人も自由に出入し得る様に為り居り全夜も信者以外の人も來り居りたる旨の供述、原審第一回公判始末書中被告の私は十三年前より長老派に属する耶蘇教信者にして常に咸興面中荷里に在る耶蘇教会に出入し居れり



大正八年二月二十八日午後九時頃全礼拝堂に至り、当時全礼拝堂は公開せられたり信者にあらざる者も自由に出入し得る様に為り居り、約三十名許参集し居りしか北間島より来りし姜鳳羽と云ふ者が参集せし、一全に対し東京にては朝鮮留学生等が朝鮮独立の宣言を計画し、京城、平壤、元山其他鮮内各地にても朝鮮独立宣言書を頒布し朝鮮独立万歳を高唱する計画あるに付、当咸興にても右各地に倣ひては如何と勧めたるに、数名の者が賛成して其方法日時等の協議を為したることある旨の供述記載、押収領第一号咸興地方法院大正八年刑第一九三号刑事々件記録検事の被告人李舜基訊問調書中、大正八年二月二十八日中荷里の礼拝堂に於て、私と張道源、趙永信、李根裁、韓泳鎬、洪基鎮外、数人居る所に間島に居る姜某なる者が来り、東京にても朝鮮留学生が独立騒をして居り、又京城其他の所にても左様のことを企てゝ居る故、咸興にても遣つたら如何と申したるより、私外前記五名の者が独立宣言することに取決め、三月一日趙永信を元山に遣はし、全地に於ける独立宣言書を取りに遣り、之に倣つて独立宣言書を作り、三月三日国葬日に米市場にて独立旗を振り廻はし、其宣言書を配布し万歳を唱ふことに手筈を決めたる旨の供述記載、全上検事の被告人韓泳鎬訊問調書中、私は大正八年二月二十八日、中荷里の礼拝堂に於て李根裁等と共に、朝鮮独立宣言書を配布し独立を宣言し万歳を唱へむとすることを協議し、其結果三月三日正午十二時を期し、咸興上里米市場の所に於て独立旗を振り独立を宣言し万歳を高唱することにせり。

右の如き企画に出でたるは京城其他に於ても韓国独立宣言を為し居り、当地に於ても全様宣言を為せば、吾人は朝鮮総督政治に信服せざるとの反響を來たし、国際會議に於ても之を認め、自然独立し得らることとならむと思ひたりし為めなる旨の供述記載及全上司法警察官の被告人洪基鎮訊問調書中、大正八年二月二十八日夜、咸興郡咸興面中荷里礼拝堂に於て朝鮮独立宣言を為すことに就て相談せり。当時近日中に京城、平壤、釜山、大邱、元山等の都会地に於て独立宣言を為し、宣言書を配布して万歳を唱ひる（原文のまま）と云ふことを内々承知し居り。当咸興も相当の都会地なるに何事もせずに居るは宜しくないとと思ひ、他所の全様の事を起さうと云ふ計画にて、大正八年二月二十八日夜、中荷里礼拝堂に二三十名の者集まり、宣言をすることに就て相談せしが其中反対派も居り。希望の者丈（だけ）残ることにし遂に李舜基、韓泳鎬、李根裁、趙永信、張道源、私、都合六名丈残り、色々と協議せし結果、他所にて宣言を遣る様子を窺ひ、咸興にても其れを倣ふて（ならつて）遣る積りであり。又宣言書を貰ふ為めに趙永信を元山に遣ることに決したる旨の供述記載に徴し之を認定す

法に照すに被告の所為は所犯 大正八年四月勅令第七号施行以前に係るを以て、刑法第八条第六条第十条に依り新旧両法の刑を比照し、其軽きものを適用すべく旧法に依れば保安法第



七条、朝鮮刑事令第四十二条に該り、新法に依れば前示勅令第七号第一条第一項に該り、旧法たる保安法の刑輕きにより前示保安法第七条朝鮮刑事令第四十二条を適用し、所定刑中懲役刑を選択し、其刑期範圍内に於て被告を懲役八月に処すべく、押収品は没収に係らざるを以て、刑事訴訟法第二百二条に依り処分すべきものなり

然れば原判決は右判者に適合し相当なるを以て被告の控訴は理由なし、仍て全法第二百六十一条第一項に（則）り主文の如く判決す

大正九年七月二十三日